

「평창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본 조례안은 2022년 03월 14일 심현정 의원이 발의하고, 2022년 03월 1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 임.

1. 제안이유

우리군 인구절벽에 따른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위원회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군수, 군민의 책무(안 제2조~제3조)
- 나. 군수의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안 제4조)
- 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합적 생애주기 관련 정책 수립(안 제5조)
- 라.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안 제7조)
- 마.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안 제8조~제14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우리군 인구절벽에 따른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및 출생율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위원회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은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군수와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합적 생애주기 관련 정책 수립에 관하여,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정함.

○ 조례안 시행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출산장려 시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지역 출산율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됨.

4. 참고자료(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